

교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박 재 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교수 자격제도는 교수 임용제도와 분리되어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만이 교수로 인식되고, 채용되지 않았지만 교수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자격 공인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이들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학점은행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양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교수요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기존 대학 형태를 초월하는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교수 자격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교수 자격공인제도'를 정립하여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을 공인함으로써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고등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교수'는 자격인가, 직책인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 '교수'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교수라고 불러주지만, 일단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중간에 전업을 하였을 때는 더 이상 '교수'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도 '전직 교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는 자격이 아니라 직책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수가 자격이라면, 그가 대학을 그만두어도 여전히 교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병원에 근무할 때에도 의사이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업한 경우에도 의사라고 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가 현재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변호사라고 하고 사람들도 그를 변호사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교수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교수라 하고, 대학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교수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교수는 자격이 아니라 직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수에 관련된 법령을 보게 되면, 교수는 어떤 자격인 것 같기도 하다. 현행 교육법은 대학의 전임 강사, 조교수 등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해놓

무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업한 경우에도 의사라고 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가 현재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변호사라고 하고 사람들도 그를 변호사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교수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교수라 하고, 대학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교수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교수는 자격이 아니라 직책인 것처럼 보인다.

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교육법상 대학의 전임강사 자격기준을 보면, 학사 학위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연구실적 연수가 2년 이상, 교육경력 연수가 1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여기서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상호대치'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법은 전임강사 외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교수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의 자격기준을 법률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를 구별할 수 있고, 나아가 '교수'와 '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다.

'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에 관해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시간강사'의 문제이다. 시간강사는 교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할까, 아니면 교수 자격이 없는 자여도 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강사도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므로 교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법률을 검토해보면 이 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시간강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전임강사의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은 대개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해서 교육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임강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 중등학교라면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교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어째서 시간강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임강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일까?

시간강사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의문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교육법상의 전임강사 자격기준이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간강사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전임교수 총수보다 시간강사 총수가 많은 것은 이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전임강사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도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교수'란 고등교육 기관의 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평생교육체제가 발달하면 대학에 근무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관 혹은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교수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학점은 은행제의 경우 어떤 인정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도 교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처럼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교수 대우를 받는 경우에 평생교육체제는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를 공인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사의 경우처럼 고등교육 분야의 교원에 대해서 자격증 제도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교수 자격제도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세계 속에서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학교수 자격제도에 관련된 제도적 모호성을 해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교수 자격이 있는 자'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개념 정의

교수라는 용어의 뜻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이어서 우선 용어와 개념을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교수 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수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용어로는 교수, 교수 자격, 교수 임용 등이 있다.

1) 교수

'교수'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교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원 중의 하나로서 가장 상급의 교원이다. 교육법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의하면 대학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가 있고 교수는 그 중 가장 상급의 교원이다. 이러한 의미의 교수는 '좁은 의미의 교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교원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 기타 객원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여 모두 교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넓은 의미의 교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수는 고등교육 수준의 교원 모두를 총칭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학교, 특수 고등교육기관, 기타 사회교육기관, 연수원,

기타 연구소 등에 근무하지만 고등교육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을 교수로 보는 것이다. 이는 '가장 넓은 의미의 교수'이다.

2) 교수 자격

교수 자격은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이를 규정한다. 교수 자격도 교수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① 좁은 의미의 교수 자격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교원 중 상급교원인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② 이와는 달리 가장 넓은 의미의 교수 자격이라고 하면 대학, 전문학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 등의 교원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을 의미할 수 있다. ③ 또 다른 의미의 교수 자격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라 할지라도 교원의 위계 중에서 가장 낮은 전임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수 자격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의사 자격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의사의 경우 전문의와 일반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른 바, 일반적으로 의사 자격이라 함은 일반의의 자격기준을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이같은 견지에서 보면 교수의 자격기준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전임강사의 자격기준과 동일한 것이 된다.

3) 시간강사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대학교원의 자격기준 혹은 교수 자격의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대학교원을 분류한 것으로서, 전임교원이 아니라 비전임교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전임교원으로서 시간강사는 교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하며, 다만 그 근무 형태는 전임이 아니라 비전임 형태로 한다는 것이다.

4) 자격제도와 자격증제도

자격제도는 특정한 역할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인된 어떤 종류의 교육기관이나 능력이 있는 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공인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교육 분야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자격증제도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이를 공시하고, 그 자격을 명시하는 증서나 증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초·중등 교사에게는 이 같은 자격증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5) 자격제도와 임용제도의 관계

자격제도와 임용제도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어떤 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자격에 관한 법령 등은 자격제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제도와 달리 개별 대학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임용제도도 있을 수 있다. 법령상 요구하는 자격 외에 일정한 능력을 추가 요구하는 임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3. 교수 자격제도의 문제점

교수 자격제도는 초·중등교사의 자격제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교수 자격제도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라는 맥락에서 시대변화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부단히 재검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교수 자격제도는 각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고등교육의 발달 추세와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맺으면서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수 자격제도는 1953년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이래 자격기준이 교육법 별표로 옮겨져 규정되었을 뿐 그 내용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과연 교수 자격제도가 무리없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1) 교수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 방식

교수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법률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령 등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수 자격기준은 종래까지 교육법 등 법률이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 '교육법'은 사범대학과 대학(단과)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둔다고 하고(제75조 제2호), 그 자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 정한다고 하였다(제79조).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5호 '교육공무원법' 별표 제1호는 대학과 초급대학의 교수 자격기준을 대학교수의 경우 학사학위 및 동등 자격자 혹은 초급대학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로서 소정의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다(〈표 1〉참고). 여기에서 연구실적이라 함은, 전문학과 또는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과 기타 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의미하고 교육경력과 연구실적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법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의 특징은 교수의 최저 학력기준을 초급대학 졸업자로

〈표 1〉 1953년의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직명	학력	학사학위자, 동등 자격자			초급대학 졸업자, 동등 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험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험연수	계
대학 교수		4	6	10	5	8	13
대학 부교수		3	4	7	4	6	10
초급대 교수							
대학 조교수		2	2	4	3	4	7
초급대 부교수							
대학 강사(전임)		2	1	3	2	3	5
초급대 조교수							
초급대 강사(전임)		2	0	2	2	1	3

하고 있다는 점, 대학과 초급대의 교수 자격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교육법은 대학 부교수는 초급대학 교수에 상당하는 자격을, 대학 조교수는 초급대학 부교수에 상당하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초급대학 전임강사는 학사학위자는 2년의 연구실적만 있으면 되고, 초급대학 졸업자는 그것에 1년의 교육경험 연수가 요구된다. 가장 장기간의 연구실적과 교육경험이 요구되는 경우는 초급대학 졸업자가 대학교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으로 총 13년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험 연수가 필요하다. 여기서 대학은 4년제 사범대학을 포함하였고 초급대학은 2년제 사범대학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교육법이 정하고 있고, 이를 동법 별표 3으로 제시하고 있다. 1953년의 교육공무원법과 비교해 보면, 학력기준에서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를 전문대학 졸업자로 바꾼 것과 조교의 자격기준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즉, 교육법 별표 3은 대학교수 자격기준으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자격자 및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자격자로서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를 요구하고 있고,

필요한 연수는 1953년 교육공무원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여기서 대학에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포함하고 전문대학은 방송통신대학(전문대 과정) 및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초급대학, 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연구실적의 정의도 약간 바뀌었는데 전문학과 또는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기관에서의 연구라는 종전의 정의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으로 달라졌다.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을 상호대치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교육경력 연수의 개념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바, 이에 대해서는 교육법 제95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수자격인정령이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 학교의 교육경력'을 교육경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8. 12. 30. 대통령령 제9259호).

이와 같이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이래 현행 교육법까지 교수의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교육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표 2〉 현행 교육법상 대학교원 자격기준

직명	학사학위자, 동등 자격자			전문대학 졸업자, 동등 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대학 교수	4	6	10	5	8	13
대학 부교수	3	4	7	4	6	10
전문대 교수						
대학 조교수	2	2	4	3	4	7
전문대 부교수						
대학 강사(전임)	2	1	3	2	3	5
전문대 조교수						
전문대 강사(전임)	2	0	2	2	1	3
조교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따라 적절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해야 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를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종류가 수시로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기준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려면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별로 각각 그 설치기준을 문부성령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교수의 자격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이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타당한 생각으로 여겨진다. 동 법안 제17조는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임강사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 연수' 요구 조항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교수 자격이라 함은 전임강

사의 자격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 교육법은 전임강사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 자격 중 최저기준인 전임강사의 자격기준 중에서 교육경력 연수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교수 자격인정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53년의 교육공무원법이나 현행 교육법 모두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에 일정기간의 교육경력 내지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의 교육경력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경력으로 되어 있다. 즉, 교육경력의 정의는 '교수 자격인정령'이라는 대통령령에서 발견되는데, 동령은 교육법 별표 3에 규정된 교육경력이라 함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 교육경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제3조 제2항). 이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경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에서는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만 해도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

자격증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경력이라는 조건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교육경력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만약 교육경력 연수 내용을 삭제한다면 학력조건과 연수실적이라는 요건만 남게 되며, 따라서 그 사람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인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절차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현행 '교수 자격인정령'을 개정하여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나아가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자격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데 관한 조항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강사는 이같이 일정한 요건을 거쳐 교수의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요약한다면, 교수 자격기준제도와 교수 임용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교

육경력을 요구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본만 하더라도 일정한 학력기준을 갖춘 자로서 '대학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라면 된다. 일본의 '대학설치기준(문부성령 제28호)'은 제4장에서 교수의 자격(제14조), 조교수의 자격(제15조), 강사의 자격(제16조), 그리고 조수의 자격(제17조) 등 총 4개조 중 4개조를 교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수의 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진 자나 그에 준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되어 있고, 강사의 자격은 전공분야에서 교육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을 뿐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수 자격기준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학 시간강사 운영실태를 관련지어 살펴보면, 법령상 교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말미암아, 대학의 입장에서는 시간강사를 용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강사 수가 많다. 시간강사의 보수가 현실적이지 못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시간강사의 총수가 전임교원보다 많은 이유는 시간강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강의 보수 때문이라기보다 교수 임용을 위한 자격 획득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입장

1) '교수 자격인정령'은 원래 교육법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교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교육법 제79조 제5항은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5항에서는 교수 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령은 제3조에서 교육법 별표 3에서 말하는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 동령의 입법취지, 즉 교육법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경력 자체의 요구가 모순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표 3〉 일본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대학설치기준)

교 수	조 교수	강 사	조 수
<p>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교육·연구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사학위를 가지고, 연구상의 업적이 있는 자 2. 연구 업적이 전호의 자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 3. 대학에서 교수의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조교수의 경력이 있고, 교육·연구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예술·체육계의 경우, 특수한 기능이 뛰어나고 교육 경력이 있는 자 6. 전공분야에 특히 우수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p>조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교육·연구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조에 규정한 교수가 될 수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조수 또는 이에 준한 직위로 경력이 있는 자 4. 수사학위를 가진 자 5. 연구소, 시험소, 조사소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연구상의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전공분야에 우수한 지식 및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강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 또는 전조에 규정한 교수 또는 조교수가 될 수 있는 자 2. 기타 특수한 전공분야에 있어서 교육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조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가진 자 2. 전호의 자에 준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서 생각해보면, 대학교원의 자격이 아직 없는 사람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 셈이 되어 이모저모 모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시간강사의 자격기준

원칙적으로 시간강사는 대학의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임 형태가 아니라 임시적이고 시간제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는 어떤 형태의 조건이든 일단 교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시간강사가 교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교육경력은 교수 자격을 얻어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대학에서 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은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수 등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외국에서도 시간강사의 문제는 그 법적 지위, 즉 전임으로의 임용에서 어떤 혜택을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전임교원 보수에 준하여 동등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equal pay for equal work), 그리고 시간강사들의 노동권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 온 것 같다.²⁾ 또한 부교수 자격을 가진 시간강사와 조교수 자격을 가진 시간강사, 그리고 강사 자격을

가진 시간강사의 대우가 같다면 이것도 모순이 아닐 수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대우를 시간강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서 하는 예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전임으로의 채용에 대한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시간강사제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제반 문제의 배경에는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내외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각종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자격기준 세분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자격기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법 별표로 규정되어 왔는데, 동표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별한 다음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각각 대학과 전문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일정한 학력,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연수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체제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나아가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대학과 전문대학이라는 두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에 상응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만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을 만들 때에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을 좀더 충실히 검토하여 이를 별도로 각각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개방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가상대학이나 기타 각종 전문적인 대학, 그리고 대학원 대학 등 각 기관의 특성에 알맞게 교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고등교육기관별로 교원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 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단기대학은 '단기대학 설치기준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교원에 대해서는 '대학원 설치기준'이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각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은 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대학원 교원의 경우는 대학 교원의 자격보다 엄격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원 전임교원에 대한 자격기준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대학원 대학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하면 대학원의 교원 자격기준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4. 결론을 대신한 제언 : 교수 자격공인제도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추세는 전

2) Ronald B. Head and Edward P. Kelly, Jr., "Part-time faculty and the law", David W. Leslie (Ed.), *Employing Part-time Facult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8.

세계의 고등교육체제에 대하여 발전적인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종래의 틀로부터 벗어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수요에 대하여 탄력 있게 대처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고등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각종 고등교육 분야의 교수요원 자격과 임용제도가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수 자격제도는 1953년 이래로 시대 변화에 대응한 발전적인 개선의 노력이 별로 없고, 근 50여년간 배출한 유능한 인재들을 고등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 자격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교수 자격공인제도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수 자격공인제도는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초·중등 교원, 의사, 변호사처럼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나 교수 자격자 단체들이 적절한 심사와 공인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에 상당한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확장일로에 있는 학교외 고등교육체제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도 교수 자격공인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수 자격공인제도를 실시하여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
- ② 교수 자격증제도의 시험적 운영 방안
- ③ 교수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조성과 이들의 자율적 규제 기능의 활성화 방안(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들의 단체와는 구별된 교수 자격자단체를 의미)
- ④ 각종 고등교육기관 혹은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교수 요원들의 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의 가능성 여부
- ⑤ 평생교육체제(학점은행제 등)를 위한 교수 요원 자격공인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
- ⑥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각종 연구소, 기타 기관, 단체를 위하여 교수 자격을 공인해주는 제도
- ⑦ 시간강사의 자격공인제도 실시 가능성과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수 등의 개선문제-시간강사가 가지고 있는 공인교수 자격의 등급에 따른 보수 등의 차별화 방안

박재운/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육학 석사, 고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교육통계분석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학교교육법 편람』, 『사립학교법 편람』 등이 있다.